

7월 수시공시 변경보고서

1. 집합투자업자명

-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(주)

2. 집합투자기구명

- 프랭클린미국금리연동특별자산모투자신탁(대출채권)

3. 주요공시내용

- 신탁계약서 제 17 조(투자대상자산취득한도) 제 1 호 및 제 12 호 위반
- 집합투자업자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위반내용

(1) 신탁계약서 제 17 조 제 1 호 :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해외대출채권 및 해외대출채권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% 이상으로 한다고 명기되어 있으나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 총액 대비 편입비율이 50% 미만으로 신탁계약서상 위반으로 간주되었음

(2) 신탁계약서 제 17 조 제 12 호 :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이하로 한다고 명기되어 있으나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 총액 대비 편입비율이 10%초과로 신탁계약서상 위반으로 간주되었음

4. 관련 자집합투자기구명

- 프랭클린미국금리연동특별자산자투자신탁(대출채권)
- 프랭클린월지급미국금리연동특별자산자투자신탁(대출채권)

5. 요구일자 및 이행일자

- 신탁업자 요구일자 : 2018년 06월 25일
- 집합투자업자 이행일자 : 2018년 06월 29일 현재 미이행